

외래강사위촉 규정

제정 2000. 9. 1.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외래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래강사라 함은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외래강사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자격을 갖는 자를 위촉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자격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2. 학력미달자라도 교육, 연구경력 및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4조(위촉절차) ① 외래강사는 1학기에는 1월말까지, 2학기에는 7월말까지 공개채용 및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

② 부득이한 사유로 외래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매학기 개강 7일전까지는 변경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간은 학기별 단위로 한다.

제6조(위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자격이 있더라도 외래강사로서 위촉(재위촉) 할 수 없다.

1. 인사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위 기재로 위촉된 자.
2. 종래의 출강률이 저조한 자.
3. 강의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자.
4. 교육관계법령 준수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해촉된 자.
5. 총장이 외래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해촉) 수업에 충실치 않고 교수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학기 도중이라도 외래강사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담당과목과 시간) ① 외래강사의 담당과목수는 같은 계통의 과목 중 2과목 이내로 한다.

② 외래강사의 담당시간수는 주당 1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강사료) 강사료는 당월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래강사 자격기준

대학원(석사과정이상)졸업자	대학 졸업자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자 2. 산업체 전공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2. 산업체 등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강사 추천 제출서류

신 규	연 임
1. 경력증명서 -----1통 2.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1통 3. 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 -----1통	1. 학위 증명서-----1통 2. 성적 증명서-----1통 (학위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